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77
----------	-------

발의연월일 : 2026. 4. 16.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박성훈
박대출 · 권영세 · 박충권
이인선 · 임이자 · 김 건
유상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표 제1호나목의 율란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율
1 .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③ (생략)

구분		율
1 . 음식점업	가. ----- ----- -----	----- ----- -----
	나. ----- ----- -----	----- ----- -----
	다. ----- -----	----- -----
2 . 제조업	가. ----- ----- -----	----- ----- -----
	나. ----- ----- -----	----- ----- -----
	다. ----- -----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

②·③ (현행과 같음)